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의결주문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

2. 제안사유

괴정2주거환경개선지구내(양지마을) 어린이집(보육시설)을 설치함에있어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(국·시비)보조 및 위탁운영근거 마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용어의 변경, 영유아보육법개정, 보육위원회의 기능이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 등 조례개정 사유발생

3. 관계법령

○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(보육시설의 설치)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(용어의 정의)

○ 영유아보육법 제24조(비용의 수납)

4. 주요골자

○ 양지마을 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에 포함

(제2조 명칭 및 위치신설)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용어 변경(제4조 1항 1호)

생활보호대상자 →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
○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표준보육단가 결정권한 변경

보건복지부장관 → 시·도지사(영유아보육법 제24조)

○ 보육위원회기능이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

(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기 제정)

5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 개정건은

○ 괴정2 주거환경지구내 도시저소득 주민들의 보육편의시설인 양지마을 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통하여 급증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문제해결등 주민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시대적 필요충분한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

○ 특히 보육시설의 설치·비용의 수납등 용어의 정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

□ 위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사회도시전문위원 정 금 배